

Samil Flash

2009.1.16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1.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마련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 우리나라에도 의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많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 기업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 폐지

주권상장법인이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 않음

3.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 등의 폐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의무 및 외부감사 의무를 폐지함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 축소

2008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이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함

5.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자산규모 기준 변경 등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기준을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를 추가하였으며, 자산규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보고기한 단축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보고기한을 단축하여 개별재무제표 보고기한과 일치시킴. 이에 따라 주재무제표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위상이 확립되고 활용도가 제고됨

2.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 변경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대차대조표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석을 추가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구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킴

3. 지배·종속 관계의 변경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지배·종속 관계를 법령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 자회사 연결범위의 변동에 따라 재무보고·사업 영역·지배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